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추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3. 4. ~ 3. 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3. 9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제3397호
--------	--------	--------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김미애 · 이복남
최병배 · 남정옥
박해정 · 오행숙
장숙희 의원

1. 제안이유

순천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순천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명 및 조문 개정(안 제1조 외) 등

3. 참고사항

관계 법령: 해당사항 없음

4. 타 지자체 입법현황

- 광역(9)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전남, 경남, 광주
- 기초(11) : 서울(강서, 양천), 경기(안양, 이천, 고양, 수원), 경남(김해, 창원, 거제),
광주(광산), 울산(북),

5. 일괄개정 대상 조례 현황

연번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1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총무과
2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총무과
3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회계과
4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총무과
5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과
6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투자일자리과
7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투자일자리과
8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투자일자리과
9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투자일자리과
10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11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과
12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13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과
14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가족과
15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과
16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과
17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도로과
18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19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사업과
20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청소자원과
21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생태환경과
22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생태환경과
23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감사실
24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관광과
25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투자일자리과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제5호, 제18조제8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근로조건”을 각각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순천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및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공무직노동자(「순천시 공무원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한 근로자) 및 기간제노동자(「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로 한다.

제3조(「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제2항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을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

노동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을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을 “(지역건설노동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을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노동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제3항 중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노동자(「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한 근로자) 및 기간제노동자(「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을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지원인”을 각각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중 “근로지원인” 을 각각 “노동지원인” 으로 한다.

제5조(「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6조(「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를 “순천시 노동복지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순천시 노동복지 문화센터(「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문화센터”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근로자” 를 각각 “노동자” 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을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근로자단체” 를 “노동자단체” 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근로복지문화센터” 를 “노동복지 문화센터” 로 한다.

제7조(「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8조(「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 를 각각 “노동자”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근로자 대표” 를 “노동자 대표” 로 한다.

제9조(「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 를 각각 “노동자”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 를 각각 “노동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공근로” 를 “공공노동” 으로,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근로자단체” 를 “노동자단체” 로, 같은 항 제4호 중 “근로자임금” 을 “노동자임금” 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유사근로자” 를 “유사노동자” 로 한다.

제10조(「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외국인 근로자” 를 “외국인 노동자” 로 한다.

제11조(「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자활근로사업” 을 “자활노동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자활근로” 를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 를 “영 제37조” 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근로소득” 을 “노동소득(영 제5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자활근로사업단” 을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자활근로사업단” 을 “자활노동사업단” 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근로활동” 을 “노동활동”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로·사업소득”을 “노동·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2조(「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3조(「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로 한다.

제14조(「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5조(「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 청소년”을 “노동 청소년”으로 한다.

제16조(「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17조(「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8조(「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 부담”을 “노동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여성 근로자” 를 “여성 노동자” 로 한다.

제20조(「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순천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21조(「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석면 안전관 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22조(「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23조(「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산 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근로자” 를 “노동자” 로 한다.

제24조(「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만 에코촌 유스 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근로 청소년” 을 “노동 청소년” 으로 한다.

제25조(「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필수노동 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의 지속성” 을 “노동의 지속성” 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근로활동” 을 “노동활동”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근로조건” 을 “노동조건” 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천시 근로복지 문화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는 「순천시 노동복지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순천시 노동복지 문화센터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수탁기관 <u>근로자</u> 의 고용· <u>근로조건</u> 5. (생략) ② (생략) 제15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4. (생략) 5. <u>근로자</u> 에 대한 고용· <u>근로조건</u> 에 관한 사항 6.-7. (생략) ②-④ (생략)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⑦ (생략) ⑧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u>근로자</u> 의 고용· <u>근로조건</u>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 ----- ----- 1.-3. (현행과 같음) 4. ----- <u>노동자</u> ----- <u>노동조건</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계약체결 등) ① ----- ----- ----- 1.-4. (현행과 같음) 5. <u>노동자</u> ----- <u>노동조건</u> ----- 6.-7.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u>노동자</u> ----- ----- <u>노동조건</u> -----
2.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2.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소속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순천시 소속 공무원과 「순천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및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단, 순천시청에 재직 중이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3. (생략)

3.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확대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1. (현행과 같음)

2. “소속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순천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노동자(「순천
시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한 근로
자) 및 기간제노동자(「순천시 기간제근로
자 운영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
다.(단, 순천시청에 재직 중이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3.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일용노동자

제2조(정의) -----

- ①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② “일용노동자”-----
-----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
- ③ “건설기계노동자”-----
----- 노동자-----
- ④ ----- 노동자-----

제5조(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
지역건설노동자 -----

 --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노동자-----

3. 지역건설노동자-----

4.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5.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6. (생략)

7.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2.-4. (생략)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생략)

제10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1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

4. 지역건설노동자-----

5. 지역건설노동자-----

6. (현행과 같음)

7. ----- 지역건설노동자 -----

제6조(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

-----지역건설노동자-----

1. 지역건설노동자 -----

2.-4.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

----- 지역건설노동자-----

② -----

----- 지역건설노동자-----

제8조(지역건설노동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

----- 지역건설노동자-----

1.-3. (현행과 같음)

제10조(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

----- 노동자 -----

② ----- 노동자 -----

제11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

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범시민명예감시관제도) ① (생략)

② 시장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명 이내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조의 사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역건설 근로자(지역건설업체 임원 제외)

3.-4. (생략)

③ (생략)

제13조(업무 등)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5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2. (생략)

3. 신고대상 : 순천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로

4.-6. (생략)

제16조(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로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생략)

제17조(협조 및 홍보) ① (생략)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순천시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를 홍보한다.

4.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생략)

----- 노동자 -----

제12조(범시민명예감시관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1.(현행과 같음)

2. ----- 지역건설
노동자 -----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업무 등) -----

1.-4. (현행과 같음)

5. ----- 지역건설노동자 -----

제15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1.-2. (현행과 같음)

3. 신고대상 : -----
--- 노동자 -----

4.-6. (현행과 같음)

제16조(상담) ① -----
----- 노동자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조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노동
자 -----

4.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1.-9. (현행과 같음)

10.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시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시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4. (생략)

5.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6.-11. (생략)

제19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생략)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

10. “노동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11.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시에 근무 중인 공무직노동자(「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한 근로자) 및 기간제노동자(「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시행) ① -----

1.-4. (현행과 같음)

5. 노동지원인-----

6.-11. (현행과 같음)

제19조(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

----- 노동지원인-----

1.----- 노동지원인---

② 노동지원인 -----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동지원인 -----

1. 노동지원인 -----

2. (생략)

3. 노동지원인 -----

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⑤ (생략)

5.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순천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2. (생략)

②-④ (생략)

6.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교양, 경제, 체육, 문화등 생활편

--

4. 노동지원인 -----
③-⑤ (생략)

5.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노동자-----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노동자-----

1.-2. (생략)

②-④ (생략)

6. 순천시 노동복지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순천시 노동복지 문화센터(「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1. 노동자-----

익 증진사업

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생략)
4.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사용자범위)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천시지역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 2.-3. (생략)

제10조(사용료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 회의등 행사
3. (생략)

[별표]

근로복지문화센터 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생	략	

7.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1.-2. (생략)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 4.-5. (생략)
- ② (생략)

8.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근로자·사용자·시민 및 순천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가 상호 신

2. 노동자-----

3. (현행과 같음)

4. ----- 노동자-----

제7조(사용자범위) -----

1. -----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2.-3.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면제) -----

1. (현행과 같음)

2. 노동자단체 -----

3. (현행과 같음)

[별표]

노동복지 문화센터 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현 행 과	같 음	

7.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

1.-2. (현행과 같음)

3. 노동자-----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8.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 노동자 -----

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순천시 지역의 고용안정과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지역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7. (생략)

④ (생략)

제9조(실무협의회) ① (생략)

② 실무협의회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순천시 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공익적 시민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 한다.

③ (생략)

9.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노동자-----

1. ---- 노동자-----

2.-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동자 대표-----

③ (현행과 같음)

9.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 노동자 -----

제2조(정의) -----

1.----- 노동자 -----

--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1. ----- 노동자-----
노동자

2. -----
----- 노동자

② -----

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2. (생략)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생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⑤ (생략)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생략)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3. (생략)

③-④ (생략)

10.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외국인 근로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생략)

②-③ (생략)

11.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순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6. (생략)

1. 공공노동, -----

노동자

2. -----

-- 노동자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노동자단체-----

4. 노동자임금-----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노동자-----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노동자----- 유사노동자-----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10.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

1.-7. (현행과 같음)

8. 외국인 노동자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11.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

1.-6. (현행과 같음)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생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5. (생략)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생략)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생략)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12. (생략)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3. (생략)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6. (생략)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8호

7. 자활노동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5. (현행과 같음)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현행과 같음)

8.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영 제5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현행과 같음)

10.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12. (현행과 같음)

13. ----- 자활노동사업단-----

제4조(지원대상) -----

1.-3. (현행과 같음)

4. ----- 노동활동 -----

5.-6. (현행과 같음)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12.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해촉) ①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하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근무활동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생략)

14.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15.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

-----노동·사업소득-----

② (현행과 같음)

12.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1.-2. (생략)

3. -----노동자-----

13.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해촉) ① -----
-----노동능력-----

② (현행과 같음)

14.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노동자-----

② (현행과 같음)

15.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노동 청소년-----

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5. (생략)

16.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순천시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생략)

18.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순천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3. (생략)
4.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5.-8. (생략)
②-③ (생략)

3.-5. (현행과 같음)

16.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노동소득-----

17.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동자-----

③ (현행과 같음)

18.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

-----노동 부담-----

19.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

1.-3. (현행과 같음)
4. 여성 노동자 -----
5.-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0.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평가대상은 대행업체가 되며,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 등이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21.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생략)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 제33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⑥ (생략)

22.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생략)

②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3.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시 산림과 소속 근로자와 순천시산림조합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또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신고한 경우
- 2.-5. (생략)

24.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5조(이용승인) ①-② (생략)

③ 수련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20.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

----- 노동자 -----

21.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노동자 -----

③-⑥ (현행과 같음)

22.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동자 -----

23.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지급제한) -----

1. ----- 노동자와 -----

2.-5. (현행과 같음)

24.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5조(이용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3. (생략)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5. (생략)

④ (생략)

25.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필수업종”이란 제1호의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생략)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4. (생략)

②-③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노동 청소년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25.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노동의

지속성-----

3. (현행과 같음)

4. -----

노동활동-----

제7조(지원사업) ① -----

1. ----- 노동조건 -----

2.-4. (생략)

②-③ (생략)

